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204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3. 12. 접수 제27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7. 11. E의 대표자 F로부터 200만 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F는 201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9. 4. 17.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1436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7. ‘D이 원고에게 6,730,287원 및 위 돈 중 1,815,28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6. 11. 1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76861호로 마쳐져 있었다.

라. G는 2020. 1.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 자녀 D, I 및 원고가 있었다.

마. D을 포함한 망 G의 상속인들은 2020.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2020. 3.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은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D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와 D의 관계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취소 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 대 179㎡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1.72㎡

부속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3.12㎡

